

## 2026년도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신규과제 재공모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「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」 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7일

<주무부처>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 
<전문기관>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

연번	RFP 관리번호	RFP명	총 연구기간	당해 연구기간	총 연구비 (억원)	선정 과제 수	과제 형태	RFP 유형. 코드
1	2026-정보- 융합기술-2- 지정공모-2	고온초전도자석 소재·부품·장비 기반 기술 및 응용 시스템 연계형 실용화 기술 개발	'26.5.~'30.12. (4년 8개월)	'26.5.~'26.12. (8개월)	470	1개	컨소시엄 연구개발	R1-2

# 목 차

1. 사업개요 .....	1
2. 지원내용 .....	3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.....	4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.....	8
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.....	11
6. 선정평가 .....	13
7. 기타사항 .....	18
8. 향후일정[안] .....	21
9. 적용 법령 및 규정 .....	22
10. 문의처 .....	22

# 1

## 사업개요

□ 사업명: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

□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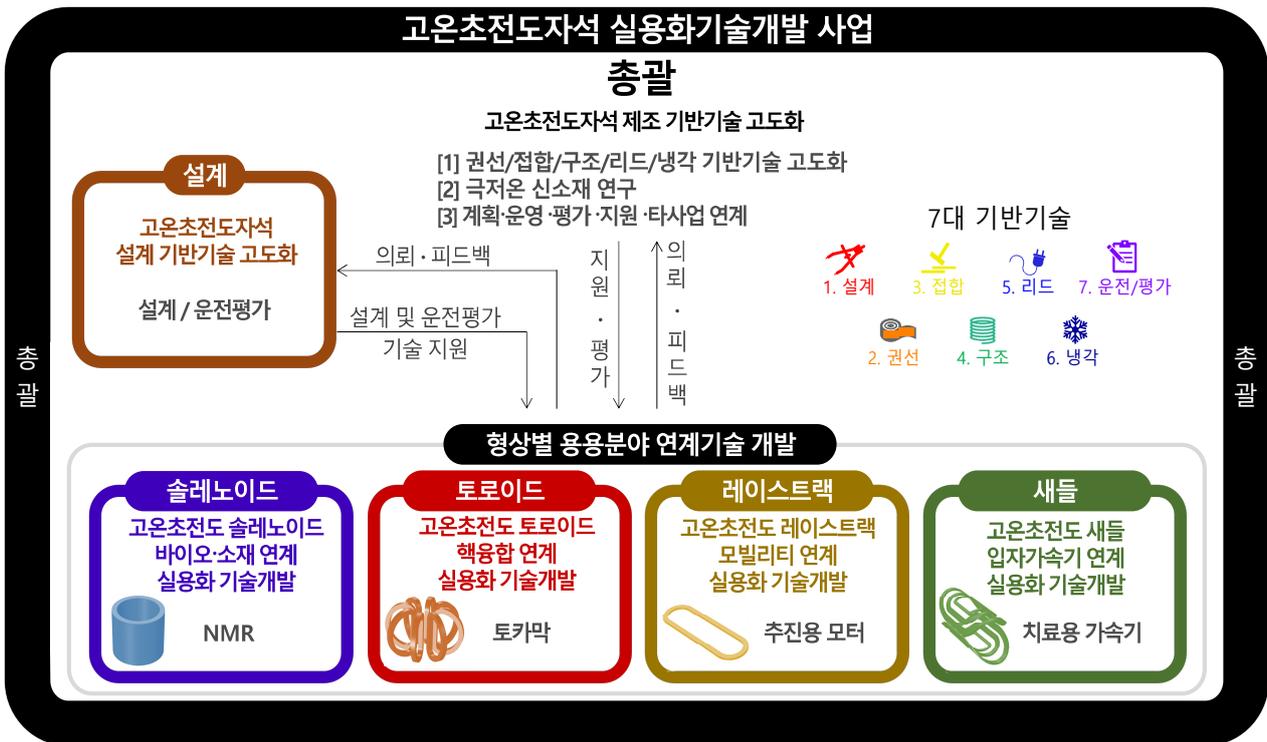
- (목적) 바이오(암치료 가속기), 에너지(핵융합), 교통(항공기) 등 응용 분야의 소형화·고성능화 혁신이 가능한 고온초전도 자석의 실용화 기술 확보

□ 사업 기간/예산(정부출연금): '26년~'30년 / 총 470억원('26년 80억원)

□ 사업 내용

- 고온초전도 자석의 응용시스템별 적용을 위한 기(既) 개발한 원천기술의 검증 및 고도화
  - 수요 분야를 포함한 산·학·연 컨소시엄 연구단을 구성하여, 고온초전도 자석 제작 및 실용화를 위한 기반기술 고도화 및 응용기기별\* 자석 프로토타입 제작
  - \* 핵자기공명장치(NMR), 핵융합로용 토카막(도넛형, 구형), 모빌리티 모터, 암 치료용 가속기

### <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운영체계(안) >



□ 사업추진체계 및 과제별 주요 역할

○ (사업 추진체계)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 수행기관을 구분하여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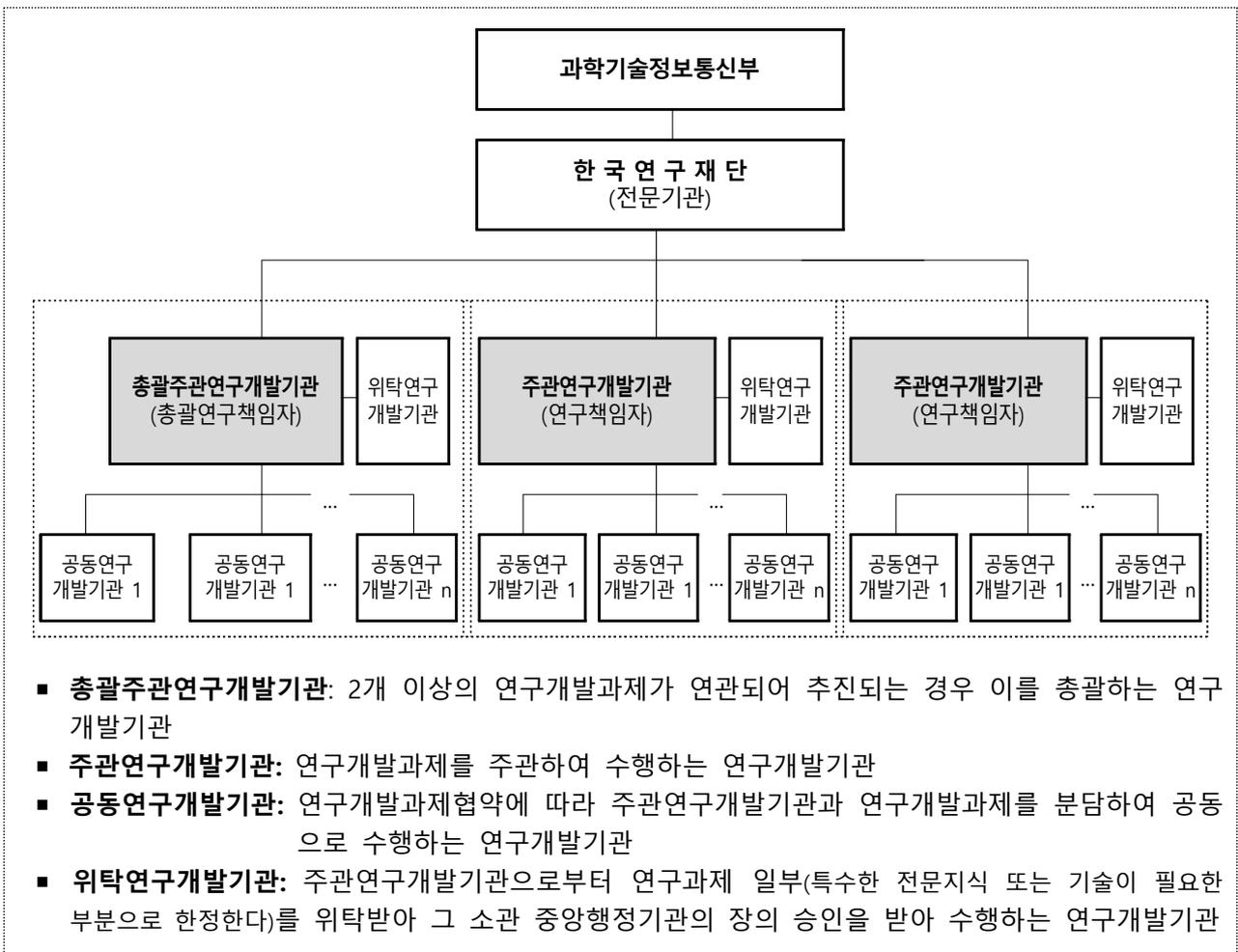


구분	주체	역할
사업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</li> <li>• 한국연구재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예산 지원</li> <li>• 사업 공고,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</li> <li>• 사업 총괄 운영, 중간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 운영 전략 및 방안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
사업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학기술 분야 대학/출연연/민간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 수행 (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기관 선정 예정)</li> </ul>

○ 과제별 주요 역할

구분	구분	주요내용
1	고온초전도 실용화 총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내 연차별 계획 수립 및 관리, 성과 확산</li> <li>■ 공용장비/재료 공동 구매 지원</li> <li>■ 초전도 소재/선재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전도 소재: 초전도 신소재 탐색, 극저온 신소재 개발</li> <li>- 초전도 선재: 제조공정 최적화, 품질 균일화</li> </ul> </li> </ul>
2	소부장 중심 기술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부장 중심 기술 고도화: 원천기술별 세부 기술의 소부장 단위 분류 및 성능/신뢰성/양산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고도화</li> </ul>
3	솔레노이드 응용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솔레노이드 응용기술: 내경 크기별 응용 분야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형 (100 mm급): NMR</li> </ul> </li> </ul>
4	토로이드 응용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토로이드 응용기술: 코일 중형비별 응용 분야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형비 2 이상: 도넛형 토카막 (Conventional Tokamak)</li> <li>- 중형비 2 미만: (Spherical Tokamak)</li> </ul> </li> </ul>
5	레이스트랙 응용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레이스트랙 응용기술: 기기 크기 기준별 응용 분야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형 회전기: 모빌리티용 고온초전도 모터</li> </ul> </li> </ul>
6	새들 응용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새들 응용기술 : 암치료용 가속기</li> </ul>

< (참고)[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] 연구개발기관 수행 체계(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) >



## 2 지원내용

□ 지원 분야: 총 1개 과제

세부사업 (내역사업)	RFP 번호	연구주제명(RFP명)	총연구비	선정 예정 과제 수	과제형태	RFP 유형 코드	보안 등급
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	2026-정보-융 합기술-2-지 정공모-2	고온초전도자석 소재·부품·장비 기반 기술 및 응용 시스템 연계형 실용화 기술 개발	470억원 (26년 80억)	1개*	컨소시엄 연구개발	R1-2	일반

\* 6개 주관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형태로, 총괄연구개발기관 1개 선정 예정

□ 지원기간 및 연구비(정부출연금) 규모

(단위: 억원)

RFP 번호	총 연구기간	1단계						2단계			
	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4차년도		5차년도	
		연구기간	연구비								
2026-정 보·융합-2 -지정공 모-2	2026.5.1.~ 2030.12.31. (3+2년)	2026.5.1.~ 2026.12.31.	80	2027.1.1.~ 2027.12.31.	100	2028.1.1.~ 2028.12.31.	100	2029.1.1.~ 2029.12.31.	100	2030.1.1.~ 2030.12.31.	90

- ※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, 예산 상황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 또한,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
- ※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[붙임] RFP를 확인 바람
- ※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

**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**

□ 신청 자격

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

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
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
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2조 제④항

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
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**제14조(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(이하 "특정연구개발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
2.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3의2. 「협동연구개발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
4.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5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6. 「의료법」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6의2.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
7. 그 밖에 연구 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## 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  - ※ 단, 기업의 경우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

**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**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**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**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  2.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  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
-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## 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

-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 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
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 - 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  - ※ 단,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\*,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
    - \*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+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"0" 이상인 경우(단,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(우선주) 자본금에 한함)
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## □ 신청 제한사항

### <연구자에 대한 제한사항>

-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
단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※ 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

-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-3책 5공)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(관련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)
  - ※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모두 '책'에 해당(공동연구과제,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않음)
 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
- (인건비 계상률\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\*\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  - \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 =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/ 연 급여)
  - \*\*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%(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),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%만 참여 가능
- (과제기획 참여자)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

### <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>

- (연구기관 구성 제한)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\*으로 구성해야 함
  - \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  - ※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
  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  - ※ 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'연구개발과제'별 적용  
<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>

연구개발기관 구분	사례1	사례2	사례3	사례4	사례5
주관연구개발기관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	<b>A기관</b>	A기관
공동연구개발기관1	B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	B기관	<b>B기관</b>
공동연구개발기관2	C기관	B기관	<b>B기관</b>	C기관	C기관
위탁연구개발기관	D기관	D기관	C기관	<b>A기관</b>	<b>B기관</b>
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	가능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	<b>불가능</b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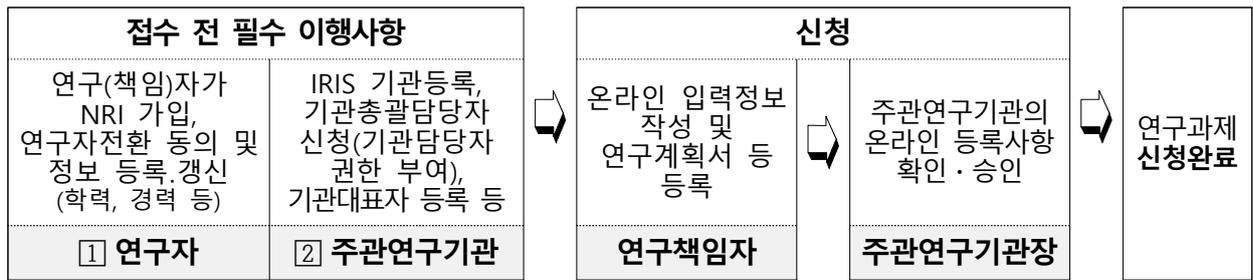
## <과제 신청 및 구성에 대한 제한사항>

- (중복 신청 제한)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\*로만 신청 가능
  - \*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(연구책임자)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
  -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공동연구개발 기관 과제에서 중복신청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상위과제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까지 평가에서 제외
  - ※ 참여연구원은 중복 신청 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할 것을 권고
- (유사과제 신청 제한)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,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존에 지원된 국가연구개발 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
  - ※ 차별성 검토 방법: 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 로그인 → 과제참여·관리 → 차별성검토
- (위탁과제 구성 제한)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
  -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 (시작품 제작, 시험평가 등은 연구용역으로 추진)

##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 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 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  - 과제를 구성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들이 각각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 - ※ 각 기관별 (1)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(HWP)과 (2) 기타증빙 1개 파일(PDF)로 각각 업로드 (공동/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, 별도 계획서 제출 불필요)
  - ※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계획서 1부 및 주관연구개발계획서 1부 총 2부 제출



※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/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.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

※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and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 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※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: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

- 시설장비 등록방법: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>[R&D고객센터]>[보유장비정보] 메뉴에서 등록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시 유의 사항 >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○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://www.iris.go.kr>) 로그인 → 우측의 'R&D 업무포털'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○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'최종확인' 완료 이후 '제출'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

○ 과제 신청 시,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'국책연구\_기획평가전문분야(국책연구사업)'를 선택하여야 함

□ 제출 서류

- (총괄) 2026년도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총괄연구개발계획서 1부
- (주관) 2026년도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1부
- 2026년도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
  - ※ 모든 별첨 서류는 총괄연구개발기관이 세부과제의 서류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
  - ※ 총괄주관기관은 주관연구개발계획서 및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모두 제출하여야함
  - ※ 필수(해당 시 필수 포함)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

<별첨 서류 목록>

구분	목록	제출주체		
		주관 기관	공동 기관	위탁 기관
별첨1	[필수]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	○	○	X
별첨2	[필수]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	○	○	○
별첨3	[필수]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/ 연구윤리 준수서약서	○	○	○
별첨4	[필수] 기관 참여 협약서	○	○	○
별첨5	[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]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	○	○	○
별첨6	[해당 시 필수] 기관 지원협약서	○	○	○
별첨7	[해당시 필수] 신규인력 활용계획서(청년고용 연계형)	○	○	○
별첨8	[협약 시][해당 시]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	○	○	○
별첨9	[해당 시]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	○	○	○

□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

- 목차 1. 연구개발의 필요성 ~ 4.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

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	계획서 분량		
	전체 분량	주관연구개발기관	공동연구개발기관
연 5억원 미만	45쪽 이내	30쪽 이내	15쪽 이내
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55쪽 이내	35쪽 이내	20쪽 이내
연 20억원 이상	제한 없음	제한 없음	제한 없음

## 5

##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## □ 신청 기간

구 분	내 용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	2026.3.17.(화) ~ 3.27.(금) 18:00까지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	2026.3.17.(화) ~ 3.27.(금) 18:00까지
신청 절차	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접수 ▷ 주관연구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

※ 과제를 구성하는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, 해당 과제 전체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연구책임자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연구개발기관: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(유효성검증 오류 등) 연구자 신청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(10일 이상) 가능
  - ※ 단,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
  - ※ 접수 완료 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전문가 평가대상 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가 될 경우 재공고 미실시
-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, Data Management Plan) 등 필수작성 불임 및 별첨 미작성,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 - \* 구축 데이터의 범위·공개 수준·활용 방안을 반드시 명시
  - ※ 제출된 DMP의 이행 여부 검토 예정
-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- 평가위원회·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
-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, 지원중단, 조기종료 등 가능
  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(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)
  -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  - 선정 후 주요사항(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  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
    - ※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  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  - 연구책임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7조, 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라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\* 현황정보\*\*를 포함하여야 하고,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권고) 현행화(IRIS 활용)
    - \* 국외수혜: 외국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·행정적(연구과제, 인력, 장비, 시설) 지원 및 강의·자문·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(단순 문의·제안·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)
    - \*\* 지원·지급 출처, 사유, 기간, 내용,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
- 시행령 제9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) ③**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8.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
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단계/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,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(권장)
    - \* 「생성형 인공지능(AI)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 ('24.3, 한국연구재단) 참조
  - **(해당 시)** 3천만원~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
    - 필수 제출 서류: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,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(단, 단일 견적서 제출 시 해당 사유서 필요)
      - ※ [근거]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, 1억 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통 표준운영 가이드라인
      - ※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'별도 심의 신청 필수
      - ※ 계획서 상 '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'에 관련 내용 명시
  - **(해당 시)**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

### □ 추진 근거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(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),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(연구개발과제의 선정)

### □ 기본 방향

-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
-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사업별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
-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과제 협약체결
  - ※ 평가점수가 60점 미만(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)은 탈락 처리함
-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
-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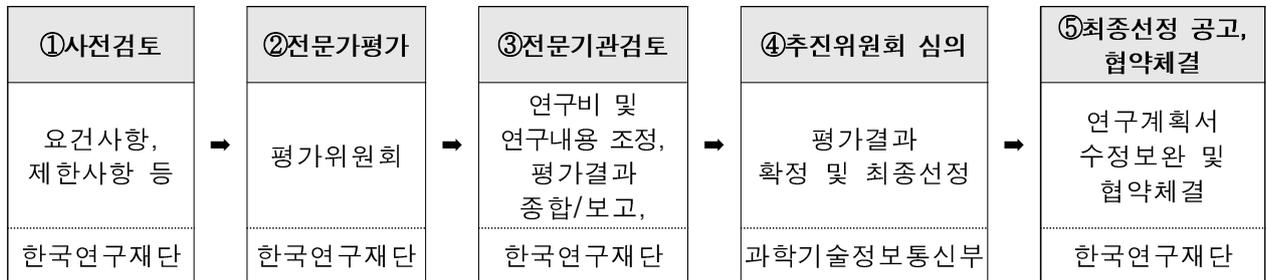
### □ 평가 방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라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(이하 “평가위원회”)을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, 온라인/현장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
  - 평가대상 과제 수가 많은 경우 또는 발표평가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경우,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
    - ※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
- (맞춤형 평가) 서면(온라인)평가, 토론평가, 발표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 중 사업·과제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식 탄력·심층적 적용 추진

○ 평가 항목 및 배점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
연구계획(50)	RFP와의 부합성	20
	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	10
	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	10
	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	10
연구역량(20)	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	10
	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	10
성과활용(30)	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	15
	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	15
<b>합 계</b>		<b>100</b>

□ 평가절차



※ 최초 공고 및 과제 접수 이후 요건탈락 및 포기 등으로 인해 단독응모가 되는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함

- (사전검토)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,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

사전검토 항목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11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</li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</li> </ul> <p>※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및 정보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,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</p>

- (평가위원회 평가)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
  - (컨소시엄연구개발과제인 경우)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과제를 모두 평가하며, 평가점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로 산정
 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www.ntis.go.kr)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평가위원회에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 검토 실시

-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- (해당 시)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, 연구 시설·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
  - ※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평가위원회 평가 시,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도입 적정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함
- (이의신청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
  - (인정 범위)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, 평가위원,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

## □ 평가 기타 사항

- (차별성 검토)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차별성검토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
  - ※ <차별성 검토 기준: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항> 1.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, 2. 연구개발 주제·목표·수행방식의 차이점
- (동점자 처리)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\*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\* 평가항목 평가 점수: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
  - ※ 평가항목별 득점까지 동일한 경우, 우선순위는 「연구계획」 → 「성과활용」 → 「연구역량」 순으로 함

## □ 성과관리

- NTIS, IRIS 기반 성과관리
  - 사업점검 및 평가 시 NTIS 및 IRIS에 입력된 연구성과만을 반영
  - ※ NTIS 및 IRIS에 입력되지 않는 성과(예, 인프라 구축, 시작품·시제품 제작, 표준·인증, scale up, 수요기업 요구사항 반영)는 관련 증빙 및 수요기업(대표) 의사 확인 등을 통해 성과 반영·인정 예정

### <필수사항>

#### □ 연구과제 상세 계획

-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 10억원 이상과제 또는 평가위원회 등에서 최종협약 전 연구목표 및 내용 일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과제는 PM과 연구자간 심층 논의를 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·보완하는 상세계획단계 추가 수행(해당과제는 별도 통보 예정)

#### □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(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)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
#####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

**제8조(연구노트의 작성)**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(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)는 개인사업자,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, 사전조사·기획평가, 연구개발과제의 조정·관리, 인문·사회분야, 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(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)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.
-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,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·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,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□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#### □ (연 5억원 이상 연구개발과제)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

-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%이상,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

#### □ 향후 소관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권장함

## □ 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

-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‘데이터관리계획’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(계획서 첨부 양식)
  - 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- DMP 내에는 구축 데이터의 범위·공개 수준·활용 방안을 명시해야 하며, 과제 선정 및 단계/최종 평가 시 DMP 이행 여부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함
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  - ※ 선정평가, 연차컨설팅(필요시), 단계평가 과정에서 DMP 및 이행여부에 대한 수정/조치 의견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은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목표를 수정하여야 함

## □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

-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·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
  -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
-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  -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
  - \*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)
- 단계 및 최종평가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,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
  -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-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
  - ※ 관련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## □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

<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>

□ 중소·중견·대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

- 2026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·중견·대기업에 대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

<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• 중소기업인 경우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
• 중견기업인 경우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
<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>

• 중소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• 중견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• 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

- (개념) 국가 R&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총액기준)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

○ 주요내용

- (대상 기업) 연구개발과제(위탁과제포함)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,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

※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

<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>

구 분	연구개발기관1(기업)	연구개발기관2(기업)	합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7억원	8억원	15억
의무채용	3명(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, 기업 당 1명이상)		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신규채용 기준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

※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
※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
- (의무채용 시점)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, 부처·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\* 가능

\*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

**<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(3년간 지원)>**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3억원	3억원	4억원
의무채용	1명	1명	0명

※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

- (고용유지 기간)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‘1년 이상’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별,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(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)

○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※ 협약용 계획서 작성/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

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(중간점검)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

- (위반시)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\*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(既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

\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R&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조건 청년고용

- (개념) 중소·중견기업이 의무 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\*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

\* (예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

○ 주요 내용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적용대상)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·중견기업

※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,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- (고용 유지) 1년 이상 고용 유지

·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

※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
※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
- 신규채용 기준

· (신규과제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· (계속과제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- (현금부담 금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
※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 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
○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 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※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

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(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)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

- (요건 미충족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

○ (개념)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% 만큼 감면

○ 주요내용

- (대상 기업)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,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

- (채용 조건) 만15세~34세의 정부 R&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신규채용 기준)

·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: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 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
· 직접 실시 시: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

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

- (고용 유지)
  -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: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
  - 직접 실시 시: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\* 후 2년
  - \*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
  - 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○ 실적 점검

- (기술실시협약) 기술실시계약 보고,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\*
  - \*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
  -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
- (기술료 등 감면)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
  -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
  -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
- (요건 미충족시)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\* 기술료 감면 미적용
  - \*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

□ (필요시, 전담인력 지정) 원활한 연구단의 성과관리를 위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참여연구원 중 1명 이상을 전담 인력으로 필수 지정

**8** **향후일정**

일정	내용
2026.3.17.(화) ~ 3.27.(금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6.3.17.(화) ~ 3.27.(금)	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기간
2025.4월 중	선정평가 실시
2025.4월 중	사업 추진위원회 심의
2025.5월	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.  
 ※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.

## 9

### 적용 법령 및 규정

□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

근거 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, 연구지원 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,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</li> <li>○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</li> <li>○ 기타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,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</li> </ul>
관련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</li> <li>○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</li> </ul>

## 10

###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※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 **문의 전 확인** 공고문,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.

 **문의순서** (1차) 연구자 ⇒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 
(2차) 주관연구기관 ⇒ 한국연구재단에 문의

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- 공고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<https://msit.go.kr>) → 소식 → 사업공고
- 한국연구재단 (<https://www.nrf.re.kr>) → 사업 안내 → 사업 공고 → 신규사업 공모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-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 접속
  - 법, 규정, 규칙: 「자료실」 → 「국가R&D연구비 관련 법·규정」 → ‘공통 법·규정’,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(한국연구재단)’ 관련 규정 확인

□ 문의처: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

구분	담당부서	연락처	이메일
IRIS 시스템 관련 문의	IRIS 콜센터(1877-2041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		
접수, 양식 관련 문의	한국연구재단 정보·융합 기술단	042-869-7838 042-869-7839	cheolsoon.park@nrf.re.kr wldud13@nrf.re.kr
평가 관련 문의	국가전략사업평가2팀	042-869-7742	han2@nrf.re.kr

※ 문의전화량이 많으므로 꼭 **메일**로 질의하여 주시고, 질의가 하루 이상 늦어졌을 경우 전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(RFP)  
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
 3 별첨 양식  
 4 신규과제 FAQ  
 5 참고 자료(IRIS 관련 매뉴얼 등)